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당사국들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이 협정 제2장에 따라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당사국들 간 상품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와 원활화를 달성하는 것
- 나. 이 협정 제8장에 따라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 다.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투자 기회의 실질적 증대를 달성하는 것
- 라. 당사국들의 경제에서의 공정한 경쟁, 특히 당사국들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 마. 이 협정 제12장에 따라 지식재산권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보장하는 것
- 바. 이 협정 제10장에 따라 이해 당사국들의 정부조달시장을 상호적으로 추가

자유화하는 것, 그리고

- 사.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제 무역을 발전시키고, 이 목적을 당사국들의 무역에 통합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것

제1.3조

일반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세금 또는 부과금(종류를 불문한다)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및 그 주해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나.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관세
- 다. 1994년도 GATT 제8조의 규정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WTO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공휴일 및 주말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단독소유기업, 합작투자, 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준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WTO 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의 조들에 대한 언급은 그 주해 및 보충규정을 포함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사국들이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말하고,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포함한다.

수입허가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 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이 협정의 제16.1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는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에 대하여,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¹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 대하여, 각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른 국민

원산지란 제1장(일반규정) 및 제2장(상품 무역)의 목적상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

¹ 한반도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연인은 이 협정상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갖지 않는다.

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WTO 협정 부속서 1다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²

WTO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WTO 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1.4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당사국들은 WTO 협정을 포함하여 당사국들이 모두 당사자인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당사국들이 모두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당사국들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서로 협의한다. 이 항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와 무관하다.
3. 이 협정은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 간의 무역 관계에 적용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협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이 다른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권리와 특권을 한국에 부여하지 않는다.

²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WTO 협정에 따라 WTO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당사국들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

제1.5조
지리적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당사국들의 영역에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2.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에 대하여,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 나.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에 대하여,
 - 1)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영역 위의 상공, 뿐만 아니라
 - 2) 국제법에 따라 자국의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에 대하여, 영해의 밖

제1.6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 공표되거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달리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질문에 대하여 신속하게 응답하고 제1항에 언급된 사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조

에 따른 모든 요청 및 정보의 제공은 당사국들이 지정한 연락처를 통하여 전달된다.

제1.7조

일반적 예외

1. 제2장(상품 무역),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7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장(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제4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제8장(서비스무역 및 그 부속서) 및 제9장(디지털 무역)³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각주를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적용되고,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제1.8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1조, GATS 제14조의2제1항 및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제7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1.9조

과세

1. 이 조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³ 제 1.5 조(일반적 예외)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2. 이 조의 목적상,

가.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에 따른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범위에서 그 협약이 우선한다.

나. 당사국들 간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내국민 대우)와 그 조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가 적용되는 것과 같은 범위에서 과세조치에 적용된다.

4.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당사국들이 모두 당사자인,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

나. 세금과 과세조치는 제1.3조(일반정의)에 정의된 관세와 그 정의 중 예외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 2) 걸프협력회의 회원국들의 경우, 세금 및/또는 세관을 담당하는 국가 정부 기관

제1.10조

정보의 공개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다른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한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당사국의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경제 운영자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1.11조

지역 및 지방 정부

각 당사국은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자국의 영역 내에서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협정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